

이 보도자료는 1. 19.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전문공보관 김성동

전화 031-909-4336

보도자료
2023. 1. 19.(목)

제 목 「이기영 前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오늘(1. 1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前 동거녀 피해자 A 및 택시기사 피해자 B를 살해한 피고인 이기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해자들 각각에 대한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
- 아울러,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B가 경찰 신고를 못하도록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을 분명히 하여 「특가범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음
-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A에 대한 살인을 집중 수사하여, ①범행 직전 독극물, 범행 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 및 발견 여부를 검색한 사실(인터넷 검색 내용 압수), ②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탈취한 사실(휴대폰 유심칩 장착내역 압수), ③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금융 거래내역 압수) 등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이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A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고 ④ 「대검 통합심리분석」 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외에도, A 명의 아파트를 빼돌리고자 매매계약을 위조하고(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해 피해자들로 가장하여 그 유족이나 지인에게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정보통신망법위반), 위장 사업체를 세워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편취한 행위(사기)까지 밝혀내었음
- 한편, 전담수사팀은, 유족에게 장례비·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B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관해 유족이 민사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 의뢰하였음
-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I 피고인 및 피해자

- 피고인 : 이기영(31세, 무직)
- 피해자 : ① A(여, 50세, 前 동거녀), ② B(59세, 택시기사)

II 공소사실 요지

※ 별첨 「공소사실 요지 표」 참조

① 피해자 A(前 동거녀) 관련

- '22. 8. 3. 오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강취할 목적으로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 [강도살인]
- '22. 8. 4.경 피해자의 사체를 공릉천 일대에 유기 [사체유기]
- '22. 8. 3.~10. 26.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총 36회에 걸쳐 39,306,682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거나 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 '22. 8. 12.~9. 22.경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총 95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며 합계 41,935,840원을 결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2. 8. 4. ~ 11. 13.경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 지인 등에게 총 9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2. 11.경 살해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 [사문서위조·행사]

② 피해자 B(택시기사) 관련

- '22. 12. 20.경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를 면탈하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며 피해자가 음주교통 사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살해 [강도살인,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 '22. 12. 20.경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체를 묶어 옷장 안에 은닉 [사체은닉]
- '22. 12. 21. ~ 12. 24.경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총 6회에 걸쳐 47,881,732원을 자신에게 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 '22. 12. 22. ~ 12. 23.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5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7,691,000원을 결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22. 12. 22. ~ 12. 25.경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총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③ 코로나 방역지원금 편취

- '22. 3. 30. ~ 5. 31.경 허위 매출내역 등을 작출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합계 1,000만 원을 편취 [사기]

III

수사 경과

- '22. 12. 25. 일산동부경찰서, 피고인을 B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 '22. 12. 28. 일산동부경찰서, 피고인의 A 살인 혐의 인지
- '22. 12. 28. 피고인 구속 ('23. 1. 4. 사건 송치)
- '23. 1. 5~18. 검찰 전담수사팀 보완수사 (피고인 조사 6회, 참고인 14명 조사, 현장검증 2회, 압수 및 계좌영장 16건 청구, 휴대폰 및 노트북 등 디지털포렌식,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 '23. 1. 19. 구속 기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IV

수사 결과

① 피해자 A에 대한 강도살인죄 적용

- 피고인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A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전 인터넷에 '독극물'에 관련된 내용을 수회 검색하였고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해제 방법도 수회 검색하였음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에 넣은 후 그 유심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넣는 등 잠금해제를 시도하였고, ATM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하였음
- 위와 같이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치밀한 범리 검토를 한 결과,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예금, 신용카드 등을 모두 탈취하였으므로 강도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강도 살인죄로 의율하였음
 - ※ 경찰과 협력하여, A의 DNA와 주거에서 발견된 비산 혈흔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A의 휴대전화를 악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 ※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수일이 지나 인터넷에 '파주 번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수회 검색하였는바, 피고인이 시신유기 장소라고 주장하는 '파주 공릉천'에 실제로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임

② 피해자들에 대한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규명

- 피고인은 A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 직후 자신의 노트북으로 A의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메시지를 발송하였음
- B에 대한 범행 후에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나 범죄 신고하는 것을 막았음
- 특히 A의 경우, A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연스럽게 증발시켰고, 사망 후 약 5개월이 지나면서 피해자 사체가 유실되고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사라지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작용 무력화를 기도하였음

③ 피해자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규명

- 피고인은 A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예금, 신용카드 등을 모두 탕진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A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의 부모부터 1천만 원을 빌림

④ 피해자 B에 대한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혐의 규명

- 피고인은 B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 누범으로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

⑤ 코로나 방역지원금 편취 사기 혐의 규명

-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매장을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운영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합계 1천만 원을 편취하였음

⑥ 추가 피해자 유무 확인

- 국과수에서 관리 중인 미제사건 DNA 중에 피고인 DNA와 일치하는 내역은 '없음'(경찰에서 확인)
- 피고인이 2021. 6. 10. 출소한 이후 관내 발생한 미제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련성은 없었음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성DNA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중이나,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만한 단서는 없음
- 그 외 피고인의 최근 휴대폰 통화상대방, 사회 경력, 최근 생활관계, SNS 계정 등 확인하였으나 추가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음

⑦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

-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됨
- 또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소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함

⑧ 범죄피해자 지원

- B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긴급생계비 지급 완료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4,500만원의 카드 대출을 받았는바, 유족들이 위 대출금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민사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 의뢰하였음

※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 분과에 변호사 11명 소속

-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 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나,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 ☒

[별첨] 공소사실 요지

구분	공소사실 요지	비고
피해자 A (前 동거녀)	'22. 8. 3. 피해자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강취할 목적으로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 [강도살인] ※ 그 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아래와 같이 약 8,124만원	살인과 절도의 경합범으로 송치 ⇒ 강도살인으로 의율 변경
	'22. 8. 4. 피해자의 사체를 파주 공릉천에 유기하여 [사체 유기]	
	'22. 8. 3.~10. 26. 피해자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39,306,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22. 8. 12.~9. 22. 피해자의 카드로 41,935,840원 상당의 물품 구매 [사기, 여전법위반]	
	'22. 8. 4.~11. 13.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하여 92회에 걸쳐 메시지 발송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검찰 인지
	'22. 11.경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 계약서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검찰 인지
피해자 B (택시기사)	'22. 12. 20.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살해 [강도살인,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 그 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아래와 같이 약 5,557만원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 검찰 인지
	'22. 12. 20. 피해자의 사체를 옷장 안에 숨겨 [사체은닉]	검찰 인지
	'22. 12. 21.~12. 24. 피해자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47,881,73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22. 12. 22.~12. 23. 피해자의 카드로 7,691,000원 상당의 물품 구매 [사기, 여전법위반]	
	'22. 12. 22.~12. 25.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하여 132회에 걸쳐 메시지 발송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검찰 인지
여죄	'22. 3. 30.~5. 31.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에서 허위의 매출자료로 코로나 방역지원금 1천만원 편취 [사기]	검찰 인지